

## 36. 국민주택기금운용및관리규정 개정

건설교통부 훈령 제 228호. 1999. 1. 11

국민주택기금운용및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2중 3. 다. 사업자보유택지의 감정평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. 사업자보유택지의 감정평가

- (1) 사업자 보유택지의 감정평가는, 한 국주택은행장과 사업자가 각각 1인 씩 선정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가격 을 산술평균한 것으로 함. 단, 2인의

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의 차이 가 30%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 하지 아니한다.

### 부 칙

1. 이 규정은 1999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신청분부터 적용한다.

주택회보